

의안번호	제 665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358 회)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도-시·군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, 향후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로 시·군별 자체 지역협의회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「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」 위원정수 증원
-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당연직 위원 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정수 확대 및 당연직 위원 직책 조정 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의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5조의 2조”를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2조의2에”로, “위원장”을 “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5조의 2조 따라 충청북도 시·군에 구성된 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” 위원장</p> <p>3.~5. (생략)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5조(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2조의2에 ----- -----</p> <p><u>업무 담당 부서장</u></p> <p>3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22조(거주지 보호)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·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“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
2. 취업직종·근로형태·근속기간·임금수준·근로조건 등 취업현황
3. 주거현황
4.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
5.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2조의2(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·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지역협의회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□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

제2조(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(이하 “지역”이라 한다)내 다양한 지원자원을 발굴하고, 공유·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.

③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지역협의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지원받고 있음
 - * ('17년) 지역협의회 운영경비 : 도 4,000천원, 시·군 17,000천원 (전액국비)
- 금번 조례개정안은 도, 시·군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체계를 지속 마련하고, 북한이탈주민수의 지속적 증가로 향후 시·군별 자체 지역협의회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,
 - * 시·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장 : 도 협의회 당연직 위원
-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위원정수를 증원하고 당연직위원 직책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사항은 없음

○ 작성자

-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 행 준